

정책

Q & A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사업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I.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개요

□ 목적

-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전 축산농가가 자율적인 소독을 실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 재발방지 추진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일제소독 효과를 거양

□ 소규모 농가 일제소독 지원사업

- 공동방제단 운영 : 년 21회
 - 특별방역기간(3~5월) : 12회(매주 수요일 - 3월 마지막 주 제외)
 - 그 이외기간(1~2, 6~12월) : 9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소독약품 공급 : 년 30회

- 공동방제단용 : 21회, 농가용 : 9회 (3월 : 1회, 6월 : 2회, 7~12월 : 6회)

기 간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	운 영 일 자
1~2월	공동방제단 운영:셋째주 수요일 소독약품 공급:셋째주 수요일(공동방제단용)	1/19, 2/16
3~5월 (특별방역 대책기간)	공동방제단 운영:매주 수요일 -3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공동방제단 운영 제외 소독약품 공급:매주 수요일(공동방제단용)	3/2·9·16·23일, 4/6·13·20·27일, 5/4·11·18·25일, (3/30은 소독약품만 지원)
6~12월	공동방제단 운영:셋째주 수요일 소독약품 공급:매월 첫째주(농가용) 및 셋째주 수요일 (공동방제단용) -6월은 둘째주 수요일에 소독약 공급 추가(농가용)	6/15, 7/20, 8/17, 9/21, 10/19, 11/16, 12/21 (6/1, 6/8, 7/6, 8/3, 9/7, 10/5, 11/2, 12/7은 소독약 지원)

※ '05.1.19. 공동방제단 운영은 '04년도 사업실시요령에 따라 기편성된 공동방제단을 활용하고 운영비 지급(2.16부터는 '05년 사업요령 적용)

II.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 지원

1. 추진방향

-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전국일제소독의 날』52회중 21회에 걸쳐 공동방제단을 동원, 일제소독을 실시
- 소독약품은 30회분을 공급하되 21회분은 공동방제단에서 사용하고, 9회분은 공동방제단을 통해 농가에게 공급
- 일제소독에 동원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소독약품비는 정부 지원

2. 사업 실시요령

가. 사업개요

- 공동방제단 편성기준 : 3,880개반
- 소규모 농가 80~100호를 기준으로 1

개 공동방제단을 편성

- 1개반별 방제요원수 : 3~6명(당일 대상농가 소독이 완료되도록 인원편성)
- 동일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를 1개반으로 구성, 다른 축종의 농가를 소독예) 양돈농가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한 경우 한우 또는 양계농가를 소독
- 소규모농가 소독 지원대상 : 311천호
- 소, 젖소, 사슴, 염소 10두미만, 돼지 500두미만, 닭 3,000수 미만, 오리 전 농가
- 지원내용
- 공동방제단 운영비 : 성과급으로 1농가 1회 소독시 2천원
 - 시장·군수는 예산범위내에서 공동방제단 편성·운영방식 조정 가능
- 소독약품 공급 : 1농가 1회 소독시 희석액 30ℓ

- 사업비 : 18,905백만원 (축발기금 12,382, 지방비 6,523)
- 공동방제단 운영비 : 13,046백만원(축발기금 6,523, 지방비 6,523)
 - 산출근거 : 310천호×2천원×21회
- 소독약품 공급 : 5,859백만원(축발기금 5,859)
 - 산출근거 : 310천호×630원(희석액 30ℓ)×30회
- 사업주관 : 시도(시군, 읍면장), 농협중앙회
- 공동방제단 편성·운영 : 시장·군수, 읍·면장(총괄 : 시도지사)
- 소독약품 : 구매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공급 - 지역축협

나. 세부 추진절차

- (1) 공동방제단 편성 및 소독약품 배정 등 사전 준비 : 1.25까지
- 시·군별 공동방제단 및 소독약품 배정
- 시·도지사는 배정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소독약품을 시·군별로 대상 농가수를 감안,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배정결과를 농림부 및 농협(축산컨설팅부)에 보고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및 읍·면별 공동방제단·소독약품 배정 등
- 시장·군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읍면별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소독약품 배정
 - 읍면별 공동방제단을 배정하고, 소독약품제 선정 및 읍면별 배정

□ 시·도별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 공급 지원

시·도	소규모 축산농가	공동방제단 편성(개소)	운영비지원 (천원)	소독약품		비고
				물량(천ℓ)	금액(천원)	
부산	502	6	21,086	452	9,000	운영비: 기금50%+ 지방비 50% 소독약품: 기금 100%
대구	1,670	21	70,124	1,503	32,000	
인천	2,220	28	93,225	1,998	42,000	
광주	980	12	41,165	882	18,000	
대전	913	11	38,355	822	17,000	
울산	2,492	31	104,661	2,243	47,000	
경기	17,392	217	730,457	15,653	328,000	
강원	30,038	375	1,261,590	27,034	567,000	
충북	21,215	265	891,017	19,093	400,000	
충남	35,779	447	1,502,734	32,201	695,000	
전북	30,402	380	1,276,877	27,362	574,000	
전남	62,407	780	2,621,070	56,166	1,160,000	
경북	47,288	591	1,986,096	42,559	891,000	
경남	56,829	710	2,386,818	51,146	1,070,000	
제주	493	6	20,725	444	9,000	
계	310,620	3,880	13,046,000	279,558	5,859,000	

- 공동방제단 방제요원 차출 및 소독차량·장비 등 동원 계획 확립
- 시군 또는 읍면단위 공동방제단 편성이 원칙이나 지리적 또는 방제요원·장비 동원 등 여건을 감안, 필요한 경우 소독 전담업체 위탁 등 운영 가능
- 공동방제단 편성 및 소규모 농가 명단 작성 등
- 읍·면장은 소독 당

- 일, 관찰대상 농가를 모두 소독할 수 있도록 공동방제단별 방제요원수를 탄력적으로 구성
 - 소독차량 및 장비 등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
- 읍·면장은 공동방제단별로 공동방제단장을 지정, 운영
- 읍·면장은 소속직원 1인을 공동방제단 책임자로 지정 운영
- 읍면 공동방제단 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농가 명단 작성
 - 부락 단위별로 성명, 주소, 전화, 사육규모 등을 기재한 대장 보관
- 시군별 공동방제단 편성 및 장비 확보내역 결과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별 공동방제단 편성 및 장비확보 내역을 농림부에 보고
- (2) 공동방제단 방제요원 교육 및 농가 홍보 실시 : 1.31까지
- 읍면 책임자 및 공동방제단장 등 소집 교육
 - 시장·군수는 읍면 책임자, 공동방제단장, 지역 생산자단체·협회 및 방역요원 등 관계자를 소집 교육
 - 동 사업요령(공동방제단 운영비 : 성과급만 지급, 정예화 등), 농가 방문요령, 소독실시 방법 등
-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홍보
 - 시장·군수는 관내 전체 축산농가에게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취지, 소규모 농가소독 지원, 협조사항 등에 대해 안내

- 문·리후렛 등을 배포
- (3) 공동방제단(방제요원) 동원 및 소독약품·장비 확보 등
 - 공동방제단(방제요원) 동원 및 소독약품 공급
 - 시장·군수는 공동방제단이 운영이 계획된 “전국 일제소독의 날” 2일전에 읍·면장에게 공동방제단 동원 통보
 - 읍·면장은 1일전까지 기편성된 공동방제단(방제요원)에게 동원계획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시기, 소집 장소, 대상농가, 준비물 등)
 - 소독 당일, 읍·면 책임자는 소집장소 현장에서 동원현황, 소독장비 등 준비사항 확인 점검
 - 서류 : 방제단별 소독 대상농가 명단, 소독 실시대장 등
 - 기자재 : 소독약품, 차량, 고압소독기 및 호스, 소독약제 저장용기 등
 - 소독약품은 지역축협에서 소독 당일 또는 전일에 읍면장에게 공급
 - 지역축협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약품 수불대장”을 기록
 - 소독장비 확보
 - 소독장비 : 고압소독기 및 호스, 소독약제 저장용기, 소형트럭 등 차량
 - 소독장비 : 행정기관 보유 장비가 부족 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공동방제단수 등을 감안, 충분한 소독장비 확보
 - 시·군, 지역축산농협, 단위농협, 관련

단체 및 업계, 전기업 축산농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독장비·차량 등을 차출·활용

(4) 공동방제단(방제요원)의 농가 방문 및 소독 실시

□ 농가 방문 및 소독요령

○ 대상농가에 대해 소독목적 및 필요성, 가축질병 또는 폐사축 발생시 신고 요령 등 지도·홍보

○ 축종별 소독 요령

- 한우·젖소 : 농장입구, 축사 주변 등 외부, 축사 내부, 농장차량 바퀴 등

- 양돈·양계·오리 : 농장입구, 축사 주변 등 외부, 농장차량 바퀴 등

- 사슴·염소 : 농장입구, 축사 주변 등 외부, 농장차량 바퀴 등

○ 방제단장은 소독 실시후 당해 농가가 비치하고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독 실시 기록부”에 소독상황을 기록

-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방제단 소독 실시대장”에 당해 농가의 소독상황을 기록하고 농가확인(서명)을 받을 것

○ 공동방제중 폐사축 또는 가축전염병 의심환축 발견시 신속히 신고

○ 소독 등이 완료되면 당해농가에 출입한 방제요원의 신발·호스 및 차량바퀴 등에 대해 소독실시후 이동

○ 명단에 파악되지 아니한 농가 발견시 소독실시 및 읍·면에 신고

(5) 공동방제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등

□ 시장·군수(시·도지사)

○ 공동방제 실시에 필요한 기타 기자재를 지방비를 확보, 지원

- 필기구, 각종 기록대장,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등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 및 구제역 재발 방지대책 관련 홍보물을 제작, 공동방제단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는 등 자체 홍보 실시

○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충분한 인력, 소독차량·장비 등 확보

- 시·군, 지역축산농협, 단위농협, 관련 단체·업계, 전기업 농가 등 협조

□ 축산관련단체

○ 시·군과 협조하여 소독장비 및 인력 등 최우선적으로 지원

○ 회원농가 등에 대해 “전국 일제소독” 관련 홍보 적극 실시

(6) 소독약품 구매 및 공급

□ 소독약품 구매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축산건설팀부)

- 연간 계획물량을 일괄 구매후, 분기별로 소요 물량을 지역축협공급

○ 소독약품 구매기준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유효한 제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제제 참조

○ 소독약제 구매절차

- 시장·군수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희망 소독약품을 결정하여 지역 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시·군에서 결정 통보한 소독약품 제제 및 물량을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에 제출
- 농협중앙회는 전국 지역축협에서 제출한 소독약품 제제 및 물량을 기준으로 구매

□ 소독약품 공급

- 주관기관 : 지역축협
 -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축협별로 분기별 소요물량을 공급
- 지역축협에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중 공동방제단이 운영되는 당일 또는 전일 1회 소요물량을 읍·면 또는 공동방제단에게 공급
 - 지역축협 및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약품 수불대장” 작성
 - ※ '05.3월말까지 소요되는 소독약품(7회분)은 '04.12월 추가 공급된 소독약품으로 충당
-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용이 아닌 농가용 약품(9회분 : 6~12월 첫 번째 수요일 등) 공급 및 배포
 - 특별방역기간중 마지막 일제소독의 날인 5.25일(수요일), 공동 방제단 운영시에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농가 소독과 함께 소독 약품을 일괄 배포하도록 조치

(7) 공동방제단 운영비 배정·지급 및 정산

□ 운영비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공동방제단 운영비 배정내역과 운영비를 지급업무를 담당할 지역축협을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 시

군별 보조금(공동방제단 운영비) 교부 결정 및 개산급 지급 통지

- 농협(축발기금사무국)은 시군별 해당 지역축협에 보조금(개산급) 지급

- 지역축협은 동 보조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

- 시장·군수는 지역축협에 읍면별 공동방제단 운영비 배정내역(총액, 매회분 금액을 각각 구분)을 통보

- 지역축협은 읍면별 공동방제단 운영비 배정통보에 따라 공동방제단이 운영되는 “전국일제소독의 날” 前日, 1회분 운영비를 읍면동장 명의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매회 입금

□ 운영비 지급

- 읍·면장은 일제소독의 날 오후에 공동방제단별 활동상황(소독실시 대장)을 취합, 소독실적 확인후 운영비를 공동방제단장에게 현금지급

- 읍·면장은 운영비를 소독실시 1농가당 2천원씩 성과급으로 지급, 별지 제5호 서식의 “운영비 지급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 보관

- 공동방제단장은 운영비를 수령받아 공동방제요원에게 운영비 지급

□ 운영비 정산

- 읍·면장은 12월말까지 운영비 정산결과를 시군 및 지역축협에 제출
- 시장·군수는 읍면별 운영비 정산결과를 확인한 후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장은 시·군의 운영비 정산결과 통보에 따라 정산급 지급 또는 미집

행액을 확인 조치하고 농협(축발기금 사무국)에 보고

- 미지급액 및 이와 관련된 이자 발생분도 축발기금에 환입

○ 농협(축발기금사무국)을 이를 확인한 후 정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III. “전국 일제소독의 날” 소독실태 현지 점검

□ 점검기관

○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축산연구소

- 구제역 특별대책기간(3~5월) : 농림부 축산국, 검역원, 축산연구소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현지출장 점검

- 기타 기간 : 검역원 및 축산연구소 직원이 월1회 점검

○ 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 직원중에서 시·군별 “전국일제소독” 현장점검 책임자를 지정, 운영

- 시·군별 현장점검 책임자를 동원, 소독 당일에 소독실태 현지점검 실시

· 방제요원 동원, 소독약 공급, 장비 확보 및 운영비 지급상황 등

· 2개 읍면이상 읍·면별 2농가 이상 현지점검(소독실시기록부 확인)

·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축분비료 공장 등 소독 및 장비실태 점검

○ 시·군

- 시장·군수는 읍·면 책임자로 하여금 “공동방제단”별 소독대상 농가중 2개

이상 농가를 무작위 방문, 소독실태 점검(소독실시기록부 등 확인)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결과, 소독 미 실시(소독실시 기록부 미기록 및 미비치 등) 및 시설미운영 농가, 업체 등은 확인서를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소독미실시 : 농가/가축·사료·동물약품·원유·가축분뇨 운반자 300만원 이하, 도축장 등 사업장 200만원 이하

- 소독설비 미구비 : 농가/도축장·집유장장/사료제조업자 500만원 이하, 종축장·부화장 300만원 이하,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200만원 이하

□ 소독대상별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 등

구 분		소독설비 및 실시기준		확인주체	
		설 비	실시기준	1차	2차
농장 (시설 면적)	300km ² 미만		주1회 이상		
	300~999km ²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 발판소독조 ○농장출입구 차량소독시설(터널식·고정식 시설 또는 협소한 진입로 등으로 인해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동력분무기) ○소독약 보관·희석탱크 및 고압분무기	주1회 이상	시·군	시·도
	1000km ² 이상	○상기 설비외 출입자의 옷과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소독시설 추가	주1회 이상		
축산 관련 시설	공통	○시설출입구 차량소독시설(터널·고정식) ○소독약 보관·희석탱크 및 고압분무기			
	도축장	○공통시설외 가축·식육차량 세차·소독시설(동파방지장치) 및 발판소독조 -가금류 도축장은 수송용기 세척·소독시설	시설:주1회 이상 차량:출입시	시·군	농림부
	집유·사료·축분공장	○공통시설외 차량 세척·소독시설 또는 2대 이상의 동력고압세척기 및 발판소독조 ○공통시설외 발판소독조	시설:주1회 이상 차량:출입시	시·군	시·도
	종축장·부화장	-종축장: 샤워실 등, 2대이상 고압분무기 -부화장: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알·난좌 소독시설	-종축장: 주1회 이상 -부화장: 부화 전후	시·군	시·도
	가축시장·검정기관	○공통시설외 출입구 발판소독조 및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가축 집합전 및 집합후	농협	시·도
가축·원유·약품·사료·가축분뇨차량			농장 출입시	농가	시·군

- 주) ① 소독 후 소독실시기록부(또는 농협제작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에 기록하고 최종 기재일부부터 1년간 보관
 ② 농장의 경우 출입차량 운전자가 차량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장주(관리인)가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차량 고발조치